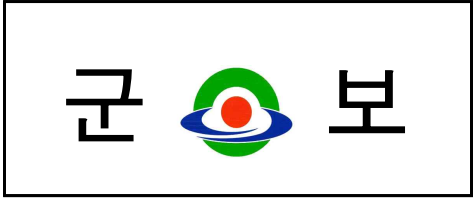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653호 2025. 10. 2.(목)

선 람	기 관 의 장

고 시

○하천점용 허가 고시(예천군 고시 제2025-115호)

공 고

○예천군 우수 부서 및 우수 직원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5-1355호)

회 람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홍보소통과(전화 650-6071)

하천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같은법 제33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의 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02일

예 천 군 수



구 분	하천점용 허가
하 천 명	내성천(국가하천)
점 용 자 주 소	예천군수(건설교통과)
위 치	예천군 호명면 월포리 624번지 일원
점용면적 (채취량)	10,000㎡(1,000㎥)
점용목적	설해대책용 모래채취
사업개요	설해대책용 모래채취
점용기간	2025년 10월 02일 ~ 2025년 12월 31일

예천군 우수 부서 및 우수 직원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예천군 우수 부서 및 우수 직원 포상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일

예 천 군



1. 규 칙 명 : 예천군 우수 부서 및 우수 직원 포상 규칙

2. 개정이유

우수 부서 및 우수 직원에 지급하는 인센티브 지급 범위 및 지급 기준을 정비하여 포상지급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직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신규 현안 사업의 인센티브 신청 조건 완화(안 제5조)

- 신규 현안 사업도 사업 선정 결과 공문 접수 시 100분의 50 범위 내포상금 신청 가능

나. 인센티브 신청 기준 등 변경(안 별표)

- 공모사업 분야, 신규 현안 사업 분야의 인센티브 신청 요건, 심사기준 등 변경(안 별표)
 - 공모사업 분야 : 총사업비 1억원 이상 사업부터 신청 가능
 - 신규 현안 사업 분야 : 사업 추진 1년 후 신청 가능 문구 삭제

4. 개정규칙안 : 별첨

5.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2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산군수(참조 :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 hu950127@korea.kr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기획예산실

3) 팩스 : 054-650-605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기획예산실(전화 : 054-650-605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 법 예 고 사 항 에 대 한 의 견 서

□ 자치법규명 : 예천군 우수 부서 및 우수 직원 포상 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규칙 제 호

예천군 우수 부서 및 우수 직원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천군 우수 부서 및 우수 직원 포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제4조제3호가목”을 “제4조제3호”로 하고 “공모 결과 선정공문 접수일”을 “사업 선정공문 접수일”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인센티브 지급 기준

1. 기관평가 우수부서 분야

등급	평가단위	평가기관	인센티브	
			포상금 (부서)	특별휴가 (유공자)
최우수 (1위)	중앙 (전국단위)	공공	200만원	2일
		민간	100만원	
	광역 (도단위)	공공	150만원	
		민간	100만원	
우수 (2위)	중앙 (전국단위)	공공	150만원	
		민간	70만원	
	광역 (도단위)	공공	100만원	
		민간	70만원	
장려 (3위 이하)	중앙 (전국단위)	공공	100만원	
		민간	50만원	
	광역 (도단위)	공공	70만원	
		민간	50만원	

※ 순위 결정(등급) 없이 단순 우수기관으로 선정(기관표창)된 경우 평가단위별로 우수 등급을 적용

※ 다음의 경우 수상등급의 1단계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

- 절대평가 등에 따라 다수 기관이 동일한 등급을 부여받는 경우
- 시상(표창장, 표창패 등)이 없는 단순 평가인 경우

2. 투자유치 분야

평가단위(투자유치액)	포상금	
	부 서	유공자
200억원 이상	125만원	150만원
100억원 이상 ~ 200억원 미만	100만원	100만원
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75만원	70만원
2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50만원	50만원
5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미지급	30만원

○ 투자유치액 기준

－ 산업단지 내

- 1)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신청자 :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신청서 상의 총투자금액
- 2)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미신청자 : 분양계약서 상의 총분양금액

－ 산업단지 외(민간투자 및 기관유치 등) : 분양(또는 매매) 금액 + 건축비

○ 투자유치일 기준

－ 산업단지 내

- 1)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신청자 :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신청서 공문 제출일
- 2)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미신청자 : 분양계약서 작성일

－ 산업단지 외(민간투자 및 기관유치 등) : 건축 착공신고서 제출일

3-가. 공모사업 분야

평가단위(총사업비 금액)	포상금			
	부 서	유공자		
		군비 0%	군비 50% 이하	군비 50% 초과
140억원 이상	125만원	250만원	200만원	150만원
80억원 이상 ~ 140억원 미만	100만원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30억원 이상 ~ 80억원 미만	75만원	150만원	100만원	70만원
1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50만원	100만원	70만원	50만원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25만원	70만원	50만원	30만원

※ 국도비 공모사업 사전심사를 거쳐 확보한 국도비 사업에 대하여만 인정
(국도비 공모사업 사전심사 심사 제외 대상사업은 예외)

3-나. 신규 현안 사업 분야

평가단위(총사업비 금액)	포상금			
	부 서	유공자		
		준비 0%	준비 50% 이하	준비 50% 초과
150억원 이상	125만원	250만원	200만원	150만원
100억원 이상 ~ 150억원 미만	100만원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6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75만원	150만원	100만원	70만원
30억원 이상 ~ 60억 미만	50만원	100만원	70만원	50만원

○ 신규 국도비 사업(미공모사업, 통상적인 공모사업, 군 실링사업 신청 가능)

4. 예산절감 분야

평가단위(예산절감 금액)	포상금	
	부 서	유공자
5억원 이상	75만원	150만원
1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50만원	100만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25만원	50만원

5. 세입증대 분야

평가단위(세입증대 금액)	포상금	
	부 서	유공자
1억원 이상	75만원	150만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50만원	100만원
3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25만원	50만원

6. 시책개발 분야

평가단위	포상금	
	부서	유공자
시책(자체사업)을 추진하여 파급효과가 큰 경우	75만원	150만원
	50만원	100만원
	25만원	50만원

※ 사업이 종결되지 않은 경우 지급 제외

7.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공적 분야

평가단위	포상금	
위원회에서 공감하는 공적	유공자	150만원, 100만원, 50만원

○ 중앙 또는 광역 단위 파급효과가 있는 규제개혁 성과를 이룬 경우

○ 대규모 축제, 행사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우

○ 집단·고질민원, 숙원사업 등을 해결하는 등 탁월한 군정 성과를 거둔 경우

※ 부서(팀)의 일상적인 업무, 성과가 입증되지 않은 단순 완료사업, 종결되지 않은 사업은 심사 제외

8. 군정 주요업무 추진 평가 분야

평가단위	포상금			
	구분	최우수	우수	장려
부서업무 종합평가(부서평가)	부서	300만원	200만원	150만원
읍면행정 종합평가(읍면평가)	읍면	300만원	200만원	150만원
업무추진 우수사례 평가	부서, 읍면	150만원	100만원	80만원
정부합동평가 담당자 인센티브	유공자	1인당 최대 50만원		

※ 평가지표, 평가방법 등 전반적인 사항은 매년 초 수립하는 군정성과 종합평가 계획을 따름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인센티브 신청) ④ 제4조 제3호가목의 경우 공모 결과 선 정공문 접수일에 별표 의 지급 기준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비 내시 공문 접수일에 그 차액 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업 비 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 경된 금액 기준으로 포상금을 신청해야 한다.	제5조(인센티브 신청) ④ 제4조 제3호-----사업 선정공문 접수일----- ----- ----- ----- ----- ----- -----.